

## 벨기에의 산업의 제도

편집실

벨기에는 지리적조건상 유럽경제의 중심지로서, 면적 3.1km<sup>2</sup>, 인구 1,002만명인 연방국가이다. 실제 노동인구는 280만(70%는 개인사업장, 30%는 공무원)이다. 1차, 2차 및 3차 산업은 각각 3%, 28%, 69%이며, 기업규모와 노동자수는 50인 미만이 38%, 50~999명이 46%, 1000명 이상이 16%이다.

사기업에서의 남녀비율은 1.7, 공무원의 남녀비율은 1/1이다. 1인당 GDP는 2만 1000U\$로서, 상당히 풍부한 나라이지만 최근 실업률이 높아서 10%이상 지속되고 있다.

### 1. 산업의 계약

노동자 5인 이상인 각 사업장은 독자적인 산업보건서비스 기관(Occupational Health Service, OHS), 또는 그룹 산업보건서비스기관(Group OHS, GOHS)에 의해 노동자에 대한 산업보건활동을 하고 있다. 그외에 철도회사는 자체 서비스 기관을 갖고 있다.

1992년에는 OHS가 266개소, GOHS가 63개소가 설치되어 운영되었으며, 산업의는 이들 OHS 또

는 GOHS에 소속하여 일하게 되고, 또 사업주는 산업의의 GOHS 소속처를 변경할 수가 있다.

산업의의 선임이나 해고에 관한 사항은 안전위생과 관련된 총회시나 회사단위의 위원회에 의견을 물어 처리하게 된다.

산업보건활동은 사업주의 경비로 부담하고, 사업주, 노동조합합동위원회(Joint Employer Union Committees)에 의해서 감독받는다.

산업의의 직무는 사업주나 노동자, 기업외부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도록 법률로 보장되어 있다. 그러나 산업의의 독립성에는 한계가 있으며 중립적 입장에서 볼 때 만족할 만하다고는 볼 수 없다.

50인이상 사업장은 사업주 및 노동자측에서 대표자를 선출하여 안전위생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대표자는 4년마다 개선한다. 50인 이하의 사업장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그 역할을 담당한다.

GOHS에서는 각 사업주 및 노동자 쌍방간의 대표자를 선출해야 하며, 산업의는 정기적으로 GOHS에 가입해서 6개월마다 활동사항을 상세하게 보고해야 한다. GOHS에서의 산업보건활동에

대한 보수는 시간당 약 145프랑 정도이다.

현행 제도인 General Labour Protection Regulation은 1965년에 제정되어, 1968년에 시행되었다. 220만명의 노동자중 자영업, 국가공무원 이외에는 사업장규모에 관계없이 산업의제도에 의해서 관리받고 있으나, 노동자의 약반수가 의무적으로 산업의에게 진찰받는 정도에 불과하다. 나머지 반수정도는 자유의사에 따라 진찰을 받고 있다.

## 2. 산업의의 실태

산업의 교육은 졸업전 정규과정에는(7년간) 없다. 산업의가 되기 위해서는 졸업한 후에 산업의 학과정을 거쳐 수료증을 받아야 한다. 현행 산업의제도는 1968년부터 시행되었으며, 1993년에 전문의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산업의학과정은 졸업 후 2년간의 수련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전문의가 되는데는 계속해서 2년간의 실습과 논문심사를 받아야 한다(유럽의 국가들이 공통적이다).

대략 25년전쯤에는 임상의들이 산업의로 전환하는 형태이었으나 최근에는 초기부터 산업의로 일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매년 약20명의 산업의가 배출되고 있으며, 여성산업의가 50%로서 매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산업의의 약 1/3은 Fulltime제이며, 젊은 산업이나 여성산업의의 경우는 Part time으로 근무하는 경우도 있다.

## 3. 산업의의 활동내용

건강관리 : 산업의는 사업주 및 노동자 모두에

게 산업보건활동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 이 근무시간의 50% 이상을 건강진단에 소모하며, 건강상담, 건강교육을 적정하게 실시한다. 이중 유해작업의 노동자는 1년에 1시간, 그외의 노동자에게는 8분간의 면접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복직이나 배치전환에 있어서의 의학적 평가와 노동자들의 정기적인 의학적 검사에 따른 지도를 한다. 그러나 질병으로 인한 휴식에 있어서는 간섭할 수가 없다.

건강진단은 3차 산업보다는 제1차 산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노동자로부터 직장과의 관계가 예상되는 증상(증세)의 호소가 있으면 산업의는 속히 의학적 검사를 해야 한다. 취업전 및 정기적 건강진단을 받도록 의무화되어있는 자로는 ① 21세이하의 노동자 ② 특정한 위험직장에 종사하는 노동자 ③ 안전을 단속하는 직종의 노동자 ④ 신체장애가 있는 노동자 ⑤ 예방접종을 받은 노동자 ⑥ 식품취급 노동자이다. 이 예방접종에 관한 것의 일부는 파상풍과 B형 간염 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작업관리 :** 노동자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 작업에 대하여 그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을 제안한다.

**작업환경관리 :** 작업환경에 있어서 특정유해물질의 농도측정 및 폭로시간을 기록해야 한다. 일정한 형식에 의해서 산업의는 각 개인마다의 문진정보, 신체적 소견 등을 기재하여 노동자가 그 직장을 떠난후라도 15년동안 보존해야 한다. 전리방사선 종사자인 경우는 30년간 보존한 후 Ministry of Employment & Labour에 송부한다.

석면이나 염화비닐에 폭로되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특별기록(유해물질 측정장소, 일시, 폭로에 대한 방어법 등)과 함께 30년간 보존이 필요하다. 수은이나 무수규산에 폭로되는 노동자에 대한 건강조사는 법령으로 모든 사업장에 의무화되어 있다. 수은에 관해서는 취업개시전 검사를 비롯해서 6개월마다 스크리닝검사, 생물학적모니터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며, 해당 근로자수는 3,175명 정도이다. 무수규산에 관해서는 취업개시전 검사와 1년마다 스크리닝검사, 일반건강진단을 시행하며 해당근로자수는 약 13,000명 정도이다.

**총괄관리** : 산업의는 건강관리뿐 아니라 새로운 생산과정을 도입하기 전에 지도하는 일을 포함하여 노동위생, 연구, 직장환경조사를 실시한다. 직장순시, 위험물질, 위험환경조사를 산업의가 직접 실시하든가 또는 다른 서비스기관을 이용한다. 정기적으로 사업주와 Committee of Safety, Hygiene & Improvement of the Workplace에 직장의 관리상태를 보고하며, 직업병 보상요구에 대한 증명과 그 요구방법에 대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보상요구는 사망, 일시적 노동불능(부분적, 전체적), 영구노동불능(부분적, 전체적), 직업병 치료에 의한 노동불능으로 구분하여 이루어진다. 직업병에 대한 보고는 직업병 기금을 관리하는 지역의료감독처와 사회보장업무와 관련한 관청에 각각 보고한다. 노동자의 직무상 위험에 대한 방어방법, 불가피한 경우는 위험에 폭로되지 않는

직종으로 변경하는 등의 의견을 사업주에게 건의 할 수가 있으며, 사업주는 이에 대해 공소할 수가 있다. 필요에 따라서는 의료감독자 및 노동자 주치의에게 자문을 구하여 결정한다.

산업의는 구급처치 이외에는 임상치료를 하지 않는다. 만성질환치료는 내과의(일반의 또는 전문의)에게 전송한다.

### 4. 기타사항

산업의의 보수에 있어서는 임상전문의의 50% 정도이나 젊은 일반의에 비하여 낮다고 할 수는 없다. 산업의의 최고 직위는 위원회의 이사가 되는 것이며, 젊은 의사가 산업의학에 흥미를 갖고 있는 정도는 중간정도라 할 수 있다. 한편, 의사 수가 증가됨에 따라 산업의가 되는데도 경쟁이 일어나고 있다.

### 5. 맷음말

벨기에에서는 프랑스의 산업의제도와 비슷하며 사업장규모와 관계없이 산업보건서비스를 받게 된다. 산업의의 사회적 평가는 가정의나 보험의 와 마찬가지로 생각되고 있으며 전문의보다 보수는 적으나 최근에는 의사수가 늘어남에 따라 젊은층간에 산업의 지향도가 증가하고 있다.